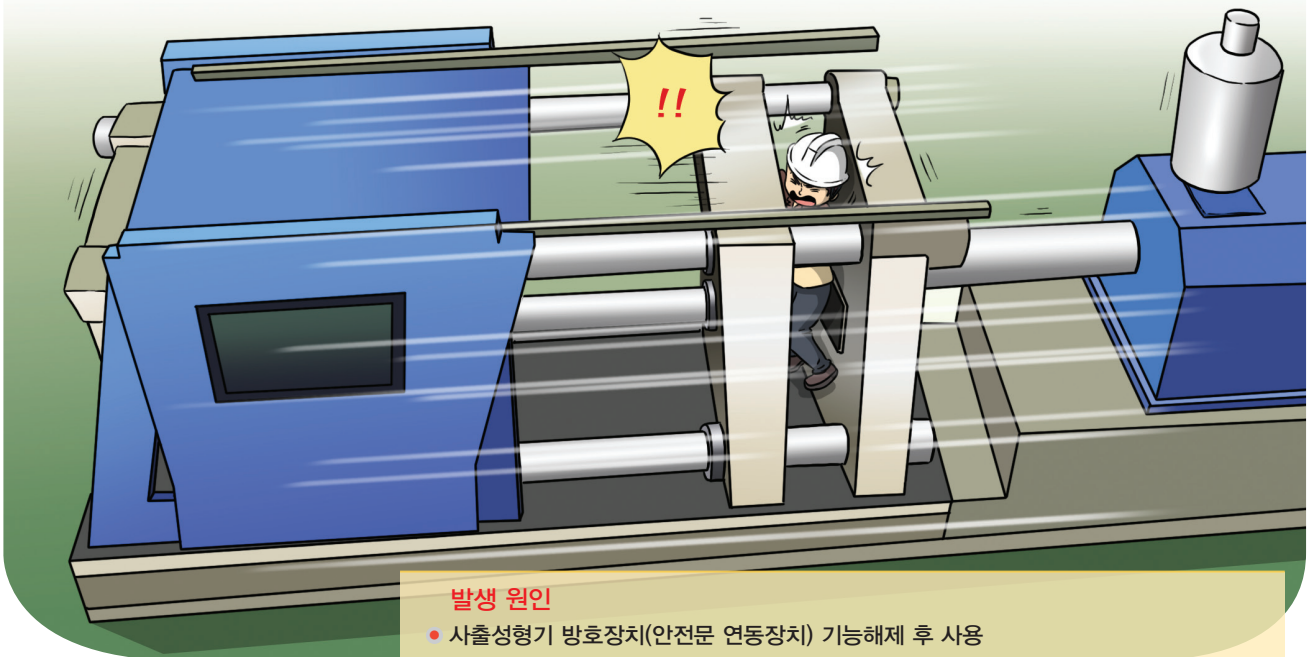


사출성형기 제품 취출작업 중 협착

사업장 내에서 제품을 취출하기 위해서 사출성형기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사출성형기 금형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



발생 원인

- 사출성형기 방호장치(안전문 연동장치) 기능해제 후 사용
- 안전문이 파손된 상태로 작업 실시
 - 사출성형기의 안전문이 파손되어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설비를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토록 하고 정비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고장 난 상태에서 작업 실시

TIP

안전작업

- 1 사출성형기 방호장치(안전문 연동장치) 기능해제 금지**
 - 사출성형기의 안전문이 개방 시 금형 전진 후 닫히지 않도록 안전문 연동장치기능을 확보 및 작업자 임의로 해제 금지
- 2 안전문 정상 기능 유지 및 주기적 점검 실시**
 - 안전문이 파손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
- 3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실시**
 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안전검사)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(안전검사 대상 유해·위험기계 등)에 의거 사출성형기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사용



안전문 및 연동장치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(고장 난 기계의 정비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(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)
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(안전검사)



사출성형기 제품 취출작업 중 협착

안전문 연동장치(인터록)는 임의로 해제하면 안 됩니다!

